

#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제 안 설 명

- 존경하는 황규복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!  
안녕하십니까? 안 광 석 의원입니다.
- 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.
- 서울시 공기업담당관은 2019년 1월 투자·출연기관 간 상이한 임원 연임기간을 1년 단위로 통일하여 탄력적으로 인사운영을 하고자 ‘출연기관 임원 연임 개선계획’을 시장방침으로 세웠고, 개정 후 계획에 따라 실행할 예정이었습니다.
- 하지만, 약 3년이 지난 2021년 10월에도 세종문화회관의 연임 규정은 아직 개정되지 않은 상태이며, 조례 및 정관에 따라 임원이 연임할 경우 3년 단위로 1회에 한하여 연임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.

- 따라서 공기업담당관이 세운 방침의 목적에 맞게 세종문화회관의 연임 규정을 1년 단위로 개정하고 1회로 제한된 규정은 삭제하여 탄력적인 인사운영이 가능케 하고, 이를 통해 우수인재가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.
  
- 이에, 본 의원은 「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·운영 조례」의 제8조제1항의 임원의 연임 기간을 3년 단위에서 1년 단위로 변경하고,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은 삭제하는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.
  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 
-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